

■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[별표 2] <신설 2011.5.30>

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(제2조의3제1항 관련)

대상자	인 정 기 준
배우자 · 자녀 · 부모	1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·자녀·부모인 경우: 인정 2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·자녀·부모가 아닌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.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.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1)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 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) 취학·요양·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·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손자녀 · 조부모	1.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: 인정 2.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.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. 취학·요양·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 었으나 생활비·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해 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